

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
창립총회 세미나

개인정보보호법상의 효율적인 개인영상정보 관리 방안

2012. 10. 26

경희대 법학연구소장
박 흰 일

<http://onepark.khu.ac.kr>

목 차

- 싸이의 “강남스타일” 뮤직비디오와 강남구 CCTV
- 현행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련규정
- 새로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색
- 한국에서의 개인영상정보보호 실태와 대응방안
- 개인영상정보의 고부가가치 활용

싸이의 “강남스타일”



<http://youtu.be/9bZkp7q19fo>

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련규정

-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련규정
 - 공개된 장소에서의 범죄예방, 시설안전 등의 목적 외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, 웹카메라) 설치·운영 금지(1항)
 - 공중이용 목욕실, 화장실, 탈의실 등에서의 CCTV 등 설치·운영 금지(2항)
 - CCTV 등 설치·운영 시 공청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, 안내판 설치 등 의무화(3,4항)
 - CCTV 등의 임의 조작, 다른 곳 비추는 것, 녹음기능 사용 금지(5항)
 - CCTV 등 안전성 확보 조치, 운영·관리 방침 마련, 설치·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 가능(6,7,8항)

싸이 뮤직비디오가 CCTV를 통해 촬영되었다면

- ▶ 어린이 놀이터, 한강 고수부지 공원, 강남대로, 버스 내부, 지하철 객차 내부와 플랫폼 OK
- ▶ 사설 마굿간, 지하주차장 No Problem
- ▶ 엘리베이터 홀, 실내 체육관
 - 일반에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에 따라 다름
- ▶ 사우나탕, 목욕탕, 화장실 - 벌칙 적용

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의 벌칙 및 과태료

- ▶ 설치·운영기준을 위반한 자(제25조 1항 위반)
→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(제75조 2항 7호)
- ▶ 화장실, 목욕실 등에 설치·운영한 자(제25조 2항 위반)
→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(제75조 1항 3호)
- ▶ 안내판 설치 등 조치의무 위반(제25조 4항 위반)
→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(제75조 3항 3호)
- ▶ 부정한 목적으로 임의로 기기조작, 다른 곳을 비추거나, 녹음 기능을 사용한 자 (제25조 5항 위반)
→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(제72조 1호)

새로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색

- ✓ CCTV와 웹카메라가 규율 대상
- ✓ 공공기관에서 다루던 CCTV를 민간부문까지 규제
- ✓ 내부 촬영 시 택시와 버스 블랙박스까지도 적용대상
→ 그 결과 서울시민들은 24시간 모니터링(surveillance) 대상이 되고 있음
- ❖ CCTV 설치·운영을 위탁한 통합관제소를 연결한다면?
가공할 **빅 브라더** 출현 가능성

한국에서의 개인영상정보보호 실태

- ✓ 범죄 수사, 신속한 범인검거에 크게 기여
- ✓ 개인영상정보 침해 가능성
- ✓ 최근 들어 피해 사례 속출
- 문제점은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 효율화
-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 모색 필요
- ❖ 시행초기 단계라서 감독당국은 아직 소극적으로 대처

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범체계의 구축

- ▶ CCTV 설치·운영을 계통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무단 유출 및 오·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규범체계의 구축이 시급
- ▶ 현재 [특허]기술 솔루션을 개발하여 서비스 중
 - 위반 가능성 있는 행위에 대해 감독자에게 통보



통제대상 행위의 패턴

- ✓ 과거의 영상을 다시 보려고 시도하는 경우
- ✓ 보관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훼손/변경/삭제하려고 시도한 경우
- ✓ 불법복제를 시도한 경우
- ✓ 원격으로 파일을 전송하려고 시도한 경우
- ✓ 전송되도록 설정된 영상보다도 현저히 많은 수의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
- ✓ 영상기록장치에 네트워크로 접속한 IP가 인증된 IP대역이 아닌 경우
- ✓ 근무시간 외에 영상기록장치에 접속하는 경우
- ✓ 인가 단말기가 아닌 타 장비의 접근과 영상 로그기록을 삭제하는 경우
- ✓ 상시 접속하는 IP가 아닌 다른 IP로 접속하는 경우 등

대응 방안

- ✓ 공공/민간분야의 다양한 영상관리 시스템에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
- ✓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의 패턴을 분석
- ✓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도록 지원

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(행안부 2012.3)

1.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
3.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
4.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·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
5.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
6.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·감독
7.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
개인영상정보의 고부가가치 활용

- 뉴욕시경(NYPD)과 Microsoft의 CCTV 등의 영상정보를 이용한 첨단 수사시스템 DAS 공개
- 우리나라에서는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되는 CCTV 영상정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익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
 - ✓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방범체계 구축
 - ✓ 초등학교내 괴한 침입, 정부청사 비인가자 출입 투신사고 등 방지
- 감시대상 영역을 제외한 불필요한 감시는 엄격히 제한
 - ✓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있는 사람의 얼굴을 마스킹 처리하고 나머지 영상정보를 위치정보와 결합하여 유용하게 활용
- 문화재 보호를 위한 CCTV를 통하여 자연의 신비 4계절 촬영
- ❖ 싸이의 “강남 스타일”은 강남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1400여대의 CCTV를 통해 매일 만들어지고 있는 셈